

(붙임3)
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 : 김**(71.03.24)

연 락 처 : 010-93**-****

주 소 : (50422)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9길 ****

항상 저희 밀양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고객님께서 대출(연대보증 포함)한 아래 여신이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①항에 의거하여, 아래와 같이 **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**하여 당초 상환기 일에도 불구하고 **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** 바,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1. 대상여신

(기준일자 : 2026.09.02.)

채무자	계좌(카드)번호	대출일자	만기일자	대출잔액(원)	연체금액(원)		연체시작일
김**	061-6806-5****	2016.06.09.	2026.06.09.	14,000,000	미 납	원금	14,000,000
					원리금	이자	0
김**	061-9800-6****	2009.09.22.	2026.09.22.	10,000,000	연체이자		1,532,488
					한도초과		77,517
김**	352-0304-3****	2016.12.01.	2026.12.01.	16,077,517	합 계		15,610,005

※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 드립니다.

2. 관련 통지사항

항 목	내 용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	2026.09.12.
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	대출원리금 미납(한도초과 포함)
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	대출금의 상환 의무, 연체이자 부담,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등
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/방법	밀양농업협동조합 홈페이지(https://my.nonghyup.com) 참조

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농협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(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재약정, 분할상환대출의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인하, 이자감면, 담보권 실행 유예 등)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, 연체등록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	소 속	전화번호	사무실 주소
이 태 기	밀양농업협동조합	055-350-6722	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777

2026년 09월 02일

발신인 : 밀양농업협동조합

